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건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1877
----------	-------

발의연월일 : 2025. 7. 31.

발 의 자 : 김 건 · 박충권 · 강대식
최보운 · 김기현 · 김미애
최수진 · 김석기 · 이성권
김병기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시납북자가족 단체 등에 대한 경비 지원 규정을 두고 있고, 현재 전시납북자가족 단체는 사단법인 6·25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가 유일하게 활동하고 있음.

그런데 전시납북자가족 단체의 경우 그간 권익 향상을 위하여 다양한 활동을 해왔을 뿐만 아니라, 전시납북자 문제에 대한 자체 조사·연구를 통해서 실태파악을 해왔고, 연구도서 및 간행물 발간을 통해서 국내·국제 사회에서 인식 재고와 여론 조성을 해왔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전 이후 납북자 및 납북자가족 단체와 달리 설립·활동의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단체 활동의 지속성 및 안정성에 한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정전 이후 납북자 및 납북자가족 단체와의 형평성 문제도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전시납북자가족 단체의 경우에도 법정 단체로 규정함으로써 전시납북자 단체의 설립 및 활동 근거를 명확히 함과 아울러 전시납북자가족의 권익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2 및 제17조의3 신설).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2 및 제17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2(단체) ① 납북자가족 상호 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상부상조
함으로써 자활능력을 배양하고 납북자가족의 권익을 향상시키기 위
하여 단체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단체(이하 “단체”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③ 단체는 정관을 작성하여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납북자가족 상호간의 상부상조를 통한 친목도모
2. 납북자가족 상호간의 복지증진 또는 권익신장
3. 단체의 설립 목적에 부합되는 조사 및 연구사업
4. 납북자와 납북자 가족에 대한 기억화 및 관련 부대 사업

⑤ 단체는 제4항에 따른 사업수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일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수익사업과 부대사업을 할 수
있다.

⑥ 단체에 대하여는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⑦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의3(관련 단체의 조직 제한 등) 누구든지 남북자가족을 지원한다는 명목하에 영리를 목적으로 단체를 조직하거나 개인적인 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17조의2(단체) ① 남북자가족 상호 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상부상조함으로써 자활능력을 배양하고 남북자가족의 권익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단체를 둔다.</u> <u>② 제1항에 따른 단체(이하 “단체”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u> <u>③ 단체는 정관을 작성하여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설립 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u> <u>④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u> <u>1. 남북자가족 상호간의 상부상조를 통한 친목도모</u> <u>2. 남북자가족 상호간의 복지증진 또는 권익신장</u> <u>3. 단체의 설립 목적에 부합되는 조사 및 연구사업</u> <u>4. 남북자와 남북자 가족에 대한 기억화 및 관련 부대 사업</u> <u>⑤ 단체는 제4항에 따른 사업</u>

<신 설>

수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일부장관
의 허가를 받아 수익사업과 부
대사업을 할 수 있다.

⑥ 단체에 대하여는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
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
을 준용한다.

⑦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단체에 보조
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의3(관련 단체의 조직 제
한 등) 누구든지 남북자가족을
지원한다는 명목하에 영리를
목적으로 단체를 조직하거나
개인적인 활동을 하여서는 아
니 된다.